

轉換期에 선 韓國金融의 進路

鄭雲燦*

〈目 次〉

- I. 韓國經濟의 展開過程과 金融의 發展
- II. 金融政策의 推移
- III. 金融改革의 原則과 方向

韓國經濟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互觀的으로 볼 때, 成長率 특히 鐵工業成長率이 현저히 둔화되었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낙관할 수 없다. 微觀的으로 보아도 사정은 밝지 않다. 經濟의 核이라고 할 수 있는 企業은, 規模의大小를 막론하고 收益性이 대체로 낮으며, 또 너무 많은 負債를 안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난 20年間의 目標達成 위주의 輸出指向的 高度成長政策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年 동안의 成長過程에서 생겨난 여러가지 不實要因을 청산하고 착실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政策方向의 모색이 절실했었다. 새로운 方向의 모색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金融制度 및 그 運營에 관한 改革의 필요성은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와 같은 改革은 政策當局에 의하여 이미 일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韓國金融에 주어진 課題은 무엇이고, 또 金融改革은 어떤 原則에 입각하여 어떤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의 궁극적 目的是 金融制度 및 그 運營에 관한 改革의 原則과 方向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20年間의 經濟의 實物部門 및 金融部門의 전개과정을 밝히고 아울러 高度成長을 위해 쓰여진 金融政策, 즉 通貨政策과 金利政策의 变遷과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 글에 있어서의 論議의 展開는 經濟學者들이 즐겨 사용하는 計量的 分析方法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歷史나 制度의 서술을 통하거나 때로는 直觀에 호소한 면도 많이 있음을 밝혀둔다. 그 이유는, 힉스(J. Hicks)도 지적하였듯이, 金融現象의 이해는 다른 分野에 비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이 글은 부분적으로 趙淳·鄭雲燦, 『金融改革論』(未發表)을 援用하였다. 이를 기꺼이 승락하신 趙淳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모든 논의의 책임은 필자에게만 있다.

해 計量的 方法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歷史的・制度的 側面을 중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에 있어서의 論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基本觀點에 입각하고 있다.

첫째, 金融制度와 그 運營은 實物經濟와 分離하여 생각할 수 없다. 經濟의 金融部門과
實物部門은 肅齒之勢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金融部門의 處生 속에서 實物部門이 발
전한다거나, 또 實物部門은 낙후되었는데도 金融部門만이 발전하는 것은 短期에서는 가능
할지 모르지만 長期의으로는 불가능하다.

둘째, 지난 20年間의 韓國金融의 展開過程은 深進적인 金融의 自律性喪失過程이다. 金融
의 自律性喪失이란 金融機關의 意思決定, 특히 貸出에 관한 意思決定이 金融機關責任下의
自律的 判斷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政府의 指示에 따르게 됨을 의미한다. 이
것은 政府가 분에 넘치는 高度成長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一絲
不亂한 投資計劃을 집행하는 데 거치장스러운 여러가지 과정을 생략하고 원하는 곳에 資金
을 配分하려는 의도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金融의 自律性喪失은 金融機關의 貸出審查를 有名無實하게 만들었으므로써 經濟全體의 效率性은 물론 金融機關의 長期的 發展을 저해하였다.
그런데 金融機關의 건전한 발전 없는 資本主義經濟의 發展은 상상하기 힘드므로 金融의 自
律性喪失은 韓國經濟의 長期的 發展을 저해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세째, 韓國의 金融政策은 一貫性이 없다. 우선 이론적으로나 實際적으로 불가능한 利子
率 및 通貨量의 同時規制를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利子率 증감과 通貨量 증감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政策當局은 한 政策手段의 증감방향을 정해 놓고
는 그 政策에 자신이 없는 나머지 다른 政策手段도 이것과 같은 방향으로 정합으로써 一貫
性 없는 政策을 추구해 온 예가 대단히 많다.

I. 韓國經濟의 展開過程과 金融의 發展

1. 韓國經濟의 展開過程

한 나라의 金融制度와 그 運營은 그 나라의 實物經濟와 分離하여 고찰할 수는 없다. 金
融改革의 原則와 方向도 實物經濟의 發展의 양상과 그 展望을 떠나서 論할 수는 없다. 따
라서 여기서는 지난 20年間의 韓國經濟의 展開過程을 개관하기로 한다.

韓國經濟는 지난 20年間(1962~81)刮目할 만한 成長을 이룩하였다. 實質經濟成長率이
年平均 8.4%에 달하여, 實質 GNP 기준에 의한 經濟規模가 4.8배로 늘어 났다.

1950年代에 高人口, 低所得, 低貯蓄, 低投資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던 韓國經濟는 1962年부터 經濟開發計劃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發展의 국면에 접어 들었다. 第1次 計劃의 初期에는 그 方向이 확실히 설정되지 못하고 여러가지 試行錯誤를 겪었다. 赤字財政을 무릅쓰는 야심적인 投資計劃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1963年에는 外換의 고갈과 격심한 인플레 이션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4년 경부터는 장래의 발전에 대한 확고한 方向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開發方向은 대략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工業化를 通하여 經濟開發을 하되 輕工業부터 시작하여 점차 重工業으로 이행한다. 둘째, 工業의 建設을 為하여 外資導入을 과감히 추진한다. 세째, 輸出을 經濟政策의 基本으로 삼는다. 네째, 國民經濟의 開發을 為하여서는 政府가 主導的인 役割을 담당하여 상당 수준의 成長率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전략은 그 당시의 韓國經濟의 어려운 실정으로 보아 대체로 時宜에 맞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賃金에 비하여 生產性이 비교적 높은 勞動力이 거의 무제한으로 存在하였고, 이것이 經濟開發의 要諦로서 作用하였다 때문이다. 즉, 政府는 輸出增大에 政策의 力點을 두어 輸出主導의 發展政策을 선택하였는데 당시에 外資導入으로 건설된 많은 輕工業은 저렴한 労賃을 기반으로 하여 곧 國際競爭力を 지니게 되었고, 輸出은 初目 할 정도로 增加하였으며 成長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上述한 것처럼 1960年代의 韓國經濟成長의 가장 큰 要因은 生產性에 비하여 賃金이 낮은 勞動의 供給이었다. 이것 덕분에 輸出第一主義가 성공할 수 있었고, 外資導入이 초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당시의 成長은 遊休狀態에 있던 生產要素(이 경우에는 勞動)를 동원하는 데 그 비결이 있었다는 意味에서 一種의 外延的 成長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外延的 成長은 오래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經濟規模가 작고 遊休生產要素가 풍부하게 존재할 때에는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經濟規模가 커지고 遊休生產要素가 부족해짐에 따라서 收穫遞減의 法則이 적용하여 結局에는 収益率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生產性向上을 通한 이론上 内延的 成장이 없이는 지속적인 成長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의 經濟成長의 物量的 實績에 도취된 나머지, 生產要素의 質 즉, 勞動과 資本의 生產性向上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外延的 成長政策만을 추진하였다.

(1) 外延的 成長과 内延的 成長의 의미에 관해서는 趙淳, 『韓國經濟의 現實과 進路』, 北峰出版社, 1981 가운데서 「内延的 成長에로의 轉換」과 Hankyo Kim (ed.), *Studies on Korea: A Scholar's Guide*, Univ. of Hawaii, 1980 가운데서 Joseph Sanghoon Chung, "The Economic System" 參照.

1972年부터 시작된 第3次 5個年計劃期間에도 韓國經濟의 운영은 1960年代와 똑같은 基調, 即 外資導入에 의한 工業建設과 輸出의 增大를 기본으로 하는 發展戰略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國民經濟의 與件이나 國際經濟의 環境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이미 1960年代 후반부터 借款企業을 비롯하여 많은 企業들이 부실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遊休勞動力은 점감하였으며, 1973年の 石油波動은 資源이 부족한 韓國經濟에 일대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政府는 이 난국에 굴복하지 않고 不實企業을 여러가지 方法으로 救濟하여 주는 동시에 輸出을 通한 成長을 겨냥하여 高率의 投資를 行하였다. 그 결과 1970年代 초반의 經濟成長率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것이 되었다. 石油波動의 「成功的의 克服」으로 政府는 高輸出, 高投資, 高成長의 基本方向의妥當性에 對해서 自信을 갖게 되었고 第3, 4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全期間을 通하여 輸出主導型 高度成長戰略을 더욱 密度있게 推進하였다.

또한 政府는 輸出目標를 達成하기 為하여서는 輸出構造를 高度化하여야 한다는 認識에 입각하여 重化學工業의 育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니 막대한 量의 外資 및 內資가 이에 投入되기 시작하였다.

重化學工業의 育成과 輸出目標의 達成이 絶對的인 政策目標로 대두됨에 따라서 莫大한 資源이 이것을 為해서 投入되었고, 經濟全般에 걸쳐 政府의 統制強化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크고 작은 많은 企業이 이 政策方向에 호응하여 投資業種의 性格과 經濟性에 對한 確實한 認識을 못한 채 重化學工業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施設의 증복에 따른 資源의 낭비는 必然의이고 製品을 生產하지조차 못하거나 비록 生產된 製品이라 할지라도 팔리지 않는 것을 生產하는 企業이 속출하였으나 이것이 1970年代末과 1980年代初의 不況과 인플레이션을 가져다 준 키다란 要因이 되었으며 이제 韓國經濟는 과감한 改編作業이 없이는 소생하기 힘들게 되었다.

2. 韓國金融의 發展過程⁽²⁾

(1) 政府主導下의 高度成長政策과 金融의 性格

1962年 經濟開發計劃이 처음으로着手된 이래 政府는 經濟의 모든 部門에서 主導的인役割을 해 왔다. 특히 高度成長에 소요되는 막대한 投資需要를 民間의 金融貯蓄만으로는 充當할 수가 없었으므로 海外로부터의 資本導入과 通貨增發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內資調達로

(2) 韓國經濟의 成長過程에서 金融이 한 역할과 韓國金融의 現況에 대해서는 World Bank, Korea: Financial Sector Report, 30 May 1980 參照。

씨 充當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手段으로 調達된 國內外貯蓄은 政府計劃上의 優先部門에 배정되었고, 또 많은 경우에 政府는 特定企業을 指定하여 그 投資를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投資資金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1970년 이후의 몇 년 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低利子率政策을 고수하여 投資主體, 특히 政府의 指定下에서 政策事業을 為하여 偏重貸出을 받고 있는 大企業의 金利負擔을 덜어주기 為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企業은 利潤을 통한 축적과정도 없이 擴張을 감행하게 되었고 이는 재차 과도한 企業의 자금수요를 초래하였으나 政府는 이러한 企業의 자금수요에 상응한 막대한 자금동원이라는 課題를 안게 되었다. 또한 企業의 擴張 결과 나타난 채산성의 악화는 經濟 전체의 자원배분의 效率性의 저하를 초래하면서 政府는 이미 악화된 채산성의 회복보다는 확장된 企業의 존속을 우려한 나머지 低金利의 자금동원이라는 課題까지 안게 되었다.

낮은 貸出金利는 銀行經營上 預金金利를 낮추게 하였고, 낮은 預金金利는 金融資產保有와 貯蓄을 저해하여 金融機關은 充分한 資金을 調達할 수 없었다.

金融機關을 通한 內資動員이 어렵게 될에 따라 通貨量增發에 의한 資金供給은 계속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實質金利의 累積的 低下를 초래하였으므로, 金融資產保有는 더욱 減少되는 惡循環의 連續을 가지오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韓國의 金融機關은 政府에 의하여 所有되고 관리되어 왔다. 왜냐하면 金融機關의 自律性을 許容하여 金融機關이 소신껏 그들의 資金配分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政府의 계획대로 자금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強力한 成長政策推進에 방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金融機關의 自律的이고 合理的인 經營을 어렵게 하였으며 政府의 姿意的인 資金配分은 여러가지 부조리의 소지를 낳게 되었다.

金融機關은 점차 政府의 資金을 配給하는 開發金融의 장구로 전락하였고 이러한 傾向은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重化學工業이 크게 推進되어 所要資金이 격증함에 따라 더욱 현저해졌다.

1970年代 중반 이후 金融의 梗塞은 深化되어, 다시 말해서 자금수요는 확대되고 정부는 금융기관의 증개를 통한 자금공급에는 계속 한계를 느끼자 각종 政策金融의 종목이 늘어났다. 1970年代에 마련되었던 이른바 政策金融의 項目을 보면, 輸出支援, 機械工業支援, 造船工業支援, 觀光振興支援, 滞拂貸金解決支援, 工團造成支援, 海外建設支援, 產業合理化支援, 中小企業支援, 防衛產業支援 등 50여 종에 달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언제나 政府의

意思가 金融에 개입하는 길이 마련되었다.

(2) 金融機關의 發展過程

① 歷史的 背景

8.15解放前까지 日本의 植民地支配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金融制度는 1950年 韓國銀行法 및 銀行法의 制定을 契機로 獨自의인 發展을 하게 되었다. 韓國銀行法과 銀行法은 주로當時 美國의 뉴욕聯邦準備銀行에勤務하고 있던 블룸필드(A. Bloomfield)와 젠슨(J. Jensen)에 의해起草되었으며 그 결과 美國銀行制度의 影響을 많이 받게 되었다.

當時 韓國銀行法 및 銀行法의 立法精神은 金融의 窮極的 目標를 通貨價值의 安定을 통한 國民經濟의 發展에 두고, 이를 達成하기 위하여 金融의 民主化와 嚴格한 政治的 中立性을 保障하면서, 中央銀行에 의한 一元的 金融管理 메카니즘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6.25事變의勃發로 인하여 銀行法의 施行이 延遲되고 休戰直後의 戰後復舊와 主要產業의 復興을 위하여 韓國產業銀行이 設立되자(1954) 우리나라의 金融制度는 當初의 金融一元化構想이 退色되었으며 一般金融과 政策金融의 二元化體制를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一般銀行은 1957年 政府에 歸屬되어 있던 銀行株式의 拂下와 함께 完全한 民營化가 實現되면서 商業ベース에 의한 正常의in 經營基盤이 마련되었다.

② 經濟開發計劃과 金融制度의 改編

ⓐ 1960年代

1961년의 5.16軍事革命과 함께 추진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은 우리나라 金融制度의 大大的인 改編을 가져왔다.

첫째, 원래 韓國銀行 내에는 金融通貨委員會가 構成되어 있어서 이 委員會가 通貨, 信用 및 外換에 관한 政策을樹立하고 또 韓國銀行의 業務 및 運營 등에 관한 指示와 監督을擔當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2年の 韓國銀行法改正에 의하여 金融通貨委員會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로改稱되었고, 財務部長官이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決議事項에 대하여 意見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再議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財務部長官의 再議要請이 金融通貨運營委員會에서 否決되었을 경우에는 大統領이 이를 最終的으로 決定하도록 规定하였다. 따라서 金融政策에 대한 最終的인 責任所在는 韓國銀行으로부터 行政府에로 移管・歸屬되었다.

둘째, 1950年에 制定된 銀行法은預金者的의 保護와 아울러 銀行經營의 自律化와 健全化를 基本精神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政府는 1957年 一般銀行의 完全民營化를 實施하였다. 그러나 이當時의 民營化過程에서 一般銀行株式의 대부분이 小數의 財閥에 의

하여 支配되는 결과를 가져와 金融機關이 大株주의 私金庫化되었다고 認識한 5.16革命政府는 不正蓄財者 財產還收處理의 一環으로 不正蓄財者들이 所有하고 있던 銀行株式을 全面還收함으로써 一般銀行은 民營化된지 4년만에 다시 政府의 支配를 받게 되었다.

또한 金融機關에 관한 臨時措置法(1962)이 制定되어 政府를 제외한 大株주의 議決條件을 制限하게 됨으로써 政府의 統制는 더욱 強化되었다. 뿐만 아니라 一般銀行에 대해서는 中長期設備金融, 外換業務, 信託業務 등을 兼業할 수 있도록 許容함으로써 兼業銀行(mixed banking)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세계, 政策的인 特殊金融機關의 機能을 強化하고자 韓國產業銀行法을 改正하고, 農業金融機構(1961)를 革新하는 한편, 中小企業金融(1961), 庶民金融(1962), 水產業金融(1962)을 擔當하는 特殊銀行을 새로이 設立하였다.

이들 特殊銀行들은 대부분 그들의 固有한 政策金融과 아울러 一般銀行業務를 겸하고 있다는 것이 特色이다. 이들은 當座預金도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預金通貨를 供給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들이 設立初期에는 特定한 財源調達方法이 있었으나 이것이 不足하게 됨에 따라 점차로 預金에 依存하게 된 데 그 原因이 있다.

金融에 대한 政府主導體制는 그 후에도 더욱 强化되어 韓國外換銀行(1967), 住宅銀行(1969) 등 戰略部門의 支援을 위한 特別金融機構가 연이어 設立되었으며, 이들 特殊銀行은 財源調達과 運用面에서 一般銀行들과 競爭的關係를 유지하면서 그 規模가 急激히 膨脹하였다.

金融運用에 있어서 政府의 이러한 強力한 介入은 當時 經濟開發에 所要되는 內資의 動員과 이의 配分을 거의 全的으로 銀行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던 金融構造下에서 政府主導에 의한 經濟開發을 金融制度面에서 賦받침하려는 데에 그 趣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6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는 金融業務의 地域的 均衡을 기하기 위하여 地方銀行(1967)이 設立되었으며, 우리나라 經濟의 急速한 對外進出에 발맞추어 外國銀行의 國內支店設立(1967)을 許可함으로써 銀行構造의 擴充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金融의 大宗인 銀行을 통한 資金調達이 그 限界를 드러내게 되자 資本市場을 포함한 第2金融圈의 育成을 위한 制度的 基盤이 점차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즉, 保險業法制定, 再保險會社의 設立과 함께 保險業界的 公信力提高를 위한 諸般措置에 힘입어 保險業이 括目할 만한 成長을 보였고 信託業務의 專擔處理를 위하여 韓國信託銀行(1968)이 設立됨으로써 그동안 一般銀行들에 의하여 散發的으로 運營되어 오던 信託業務가 本軌道에 오르게 되었다.

④ 1970年代

政府는 1972年 8.3措置를 前後 하여 우리나라 經濟의 痘疾的인 病弊가 되어오던 私金融을 制度金融화하려는 方案의 하나로서 短期金融會社를 새로이 設立하여 商業銀行과의 補完關係에서 短期商業 어음에 관련된 業務를 취급하게 하였으며, 相互信用金庫를 整備하여 制度의庶民信用金融機構로서의 性格을 부여하였다.

이들 金融機關은 私金融市場에서 流通되던 資金을 公金融圈으로 흡수함으로써 企業短期資金의 效率化와 信用秩序의 確立에 기여하기 위해 設立되었다.

또한 그동안 發展이 遲延되어 오던 資本市場의 育成을 위하여 資本市場育成法, 企業公開促進法을 制定하고 8.3措置의 後續措置로서 發行市場과 流通市場의 機能補完에 힘쓴 결과 最近에 와서는 企業의 外部金融調達에 있어서 直接金融方式이 다소 活氣를 띠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76年에는 輸出入銀行이 正式으로 發足되어 延拂輸出金融을 專擔하게 되었으며, 1981年에는 韓國開發金融會社가 韓國長期信用銀行으로 變貌되어 長期資金을 貸付해 주는 專門金融機關으로 發展하였다.

③ 韓國金融機關의 特徵과 問題點

以上과 같은 發展過程을 거쳐온 우리나라 金融制度의 特徵은 政府의 強力한 統制와 金融組織의 二元化 및 二元化된 金融組織間의 業務重複化로 規定할 수 있다.

通貨信用政策의 樹立과 執行에 있어서 그 最終責任이 政府에 歸屬된 점, 一般銀行에 대한 政府의 所有 및 強力한 統制는 經濟計劃과 金融間의 緊密性을 유지함으로써 金融機關이 經濟計劃에 필요한 資金을 충분히 供給할 수 있도록 한다는 肯定的인 側面을 가지고 있는 반면, 金融機關의 費用意識을 무디어지게 함으로써 資金配分을 效率化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政府이건 企業이건 간에 資金을 얻기 쉬다는 생각에서 자칫하면 能力以上的 事業을 萬 possibility까지 内包하고 있다는 否定的인 側面도 있다.

또한 國民經濟의 優先部門에 대한 政策金融支援을 目的으로 設立된 各種 特殊銀行들은 當初 一般金融機關에 대하여 補完의이고 專門의인 金融機關으로서의 性格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財政支援의 限界로 인하여 그 財源을 金融資金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一般銀行들과 競爭의인 位置에 서거나 一般銀行과 同質化되는 結果를 초래하였다.

(3) 經濟成長過程에서의 金融의 역할

지난 20年間의 經濟成長過程에서의 金融의 공헌은 어떻게 評價되어지는가? 이 문제는 일단 金融部門이 實物部門에 미치는 영향을 理論的으로 고찰한 후 이 理論的 들 속에서 논

의되어져야 한다.

어떤 經濟를 막론하고 生產은 企業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企業投資의 量과 質은 經濟成長을 위하여 決定의 중요성을 지닌다. 經濟가 成長하기 위해서는 企業이 良質의 投資를 가급적 많이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投資를 위해서는 資金이 필요하다. 아무리 企業의 投資에 대한 구상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資金의 供給이 부족하면 企業投資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이 資金은 企業의 社內蓄積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지만 外部로부터 조달될 수도 있으며 金融機關은 企業에게 가급적 많은 資金을 供給할 것이 기대되어진다.

企業이 投資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는 판단을 잘못하는 수도 있다. 生產物에 對한 需要를 過大評價한다거나, 生產原價를 過小評價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企業이 投資計劃을 잘못 세운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의 오류로 인하여 企業이 損害를 보게 되면 이 企業에게 貸出을 해 준 金融機關도 損害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金融機關은 企業에게 貸出을 해 줄 때 企業의 投資內容에 對하여 第二次的인 심사를 함으로써 불건전한 投資를 미연에 방지하는役割을 해준다.

이와 같이 企業에게 있어서 金融機關은 資金의 供給者로서 그리고 企業의 投資計劃의 第二次의 심사기관으로서 그 重要性이 실로 至大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³⁾

또한 金融機關은 貯蓄과 投資의 仲介機能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企業에게 非인플레이션의 方法으로 資金을 供給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理論的 틀 속에서 韓國의 成長過程에서 金融이 한 역할을 평가해 보자. 먼저 韓國의 金融은 企業의 投資를 뒷받침하기 위한 充分한 資金을 供給하였는가?

우선 量的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金融은 어느 모로 보나(〈표 1〉 참조) 實物部門에 못지 않은 成長을 해왔다. 그러나 融資의 内容을 잘 검토해 보면 거의 모든 金融이 政策金融이고一般金融은 매우 稀少하므로 一般金融에 의하여 融資받는 企業의 立場에서 본다면 金融은 企業의 投資를 뒷받침하기에 充分한 程度의 資金을 供給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政策金融을 받는 企業의 見地에서 보아도 融資의 規模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히 政策金融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政策事業이 經濟性을 無視한 것이라면 그 政策事業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은 지속적인 融資 뿐만 아니라 이런 企業의 見地에서는 資金이 充分히 供給되고 있다고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現在 韓國에서는 많은 投資事業이 經濟性이 無視된 채 推進되고 있으므로 金融이 企業의 資金需要를 充分히

(3) 金融機關의 第二次의 심사기능에 관하여는 J.A. Schumpe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1934 參照.

〈표 1〉 經濟成長率, 物價上乘率 및 金融指標의 推移

연도	실질경제 성장율 (%)	도매물가 상승율 (%)	통화량 (M ₁) 末잔액 (10억 원) 증가율	총통화 (M ₂) 末잔액 (10억 원) 증가율	국내신용 (DC) 末잔액 (10억 원) 증가율	본원통화 (RB) 末잔액 (10억 원) 증가율	예금은행 일반대출 금리 (%)
1962	2.2	9.2	39 10.1	52 24.9	55 —	30 —	15.7
1963	9.1	21.1	42 6.3	55 5.8	66 20.0	28 -6.7	15.7
1964	9.6	34.9	49 16.7	64 16.4	71 7.6	33 17.9	16.0
1965	5.8	10.3	66 34.2	97 51.6	100 40.8	48 45.5	26.0
1966	12.7	8.6	85 29.7	157 61.7	131 31.0	80 66.7	26.0
1967	6.6	6.5	123 44.5	254 61.7	233 77.9	109 36.3	26.0
1968	11.3	8.1	178 44.6	437 72.0	430 84.5	156 43.1	25.2
1969	13.8	6.9	252 41.7	705 61.3	684 59.1	216 38.5	24.0
1970	7.6	9.4	308 22.1	898 27.4	867 26.8	300 38.9	24.0
1971	9.4	8.6	358 16.4	1,085 20.8	1,135 30.9	288 -4.0	22.0
1972	5.8	13.8	519 45.1	1,452 33.8	1,479 30.3	428 48.6	15.5
1973	14.9	7.4	730 40.6	1,981 36.4	1,949 31.8	624 45.8	15.5
1974	8.0	41.9	946 29.5	2,457 24.0	3,006 54.2	775 24.2	15.5
1975	7.1	26.1	1,182 25.0	3,150 28.2	3,973 32.2	1,077 39.0	15.5
1976	15.1	12.2	1,544 30.7	4,205 33.5	4,837 21.7	1,438 33.5	18.0
1977	10.3	9.0	2,173 40.7	5,874 39.7	5,979 23.6	2,072 44.1	16.0
1978	11.6	15.3	2,714 24.9	7,929 35.0	8,722 45.9	2,802 35.2	19.0
1979	6.4	15.0	3,275 20.7	9,878 24.6	11,826 35.6	3,468 23.8	19.0
1980	-6.2	38.9	3,807 16.3	12,535 26.9	16,777 41.9	3,244 -6.5	20.0
1981	9.1	20.4	3,986 4.7	15,688 25.2	22,459 33.9	3,802 -13.6	17.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및 내부자료

滿足시켜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상을 충분히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金融은 投資에 對한 審查機能을 제대로 발휘하였는가?

이에 對한 對答은 단연코 否定의이다. 우리나라의 金融, 특히 銀行의 歷史는 審查機能의 衰失의 過程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銀行이 그들의 심사기능을 제기당한 이후에, 그들의 收支를 確保하기 為하여서는 擔保를 確保해야만 하므로, 銀行은 貸出申請에 對한 經濟的 審查는 포기한 채 오직 擔保貸出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金融機關은 貯蓄과 投資의 仲介機能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金融機關은 民間의 貯蓄을 金融貯蓄의 形態로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또 審查機能이 마비되어 동원된 資金을 生產의in 投資에도 연결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金融機關의 운영은 지난날의 高度成長을 크게 제약하였는가? 둘째, 金融產業의 體質이 앞으로도 改善되지 않는다면, 今後의 經濟成長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첫번째의 질문에 대한 答은 다음과 같다.

外延的 成長의 初期에 있어서는, 우리 經濟의 產業構造는 极히 간단하였고, 投資對象도 明確하였으며, 그 規模도 작았었다. 外延的 成長時代에 가장 效驗이 있는 成長方式은 國內의 金融貯蓄의 增大와 內資動員을 通한 投資보다도 外資導入을 通한 成長이었기 때문에 金融에 對한 政府의 統制의 非效率이 비교적 적게 나타날 수 있었다. 또한 外延的 成長의 初期에 있어서는 오늘날에 비하여 金融에 對한 政府의 支配가 그 幅과 深度에 있어 비교적 유연하였고, 1964年の 換率引上, 1965年の 金利現實化 등의 조치가 보여주듯이 비교적 市場原理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政策의 기조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金融의 官營이 차아내는 非效率이 비교적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의 질문에 對한 答은 다음과 같다.

金融機關에 對한 政府의 支配 및 金融의 官營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이것이 內延的 成長에 對한 커다란 障碍要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內延的 成長을 뒷받침하기 為한 投資效率의 向上은 지금까지의 金融運營方式으로는 도저히 이루어 질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資本主義의 經濟發展이 장기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나라하고 金融部門이 제대로 機能을 발휘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金融制度의 正常化 없이 長期的 成長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이며, 우리의 金融制度의合理的改編 및 그 運營方式의 전환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I. 金融政策의 推移

금융정책이란 通貨量 또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變數一例를 들면 利子率一를 변화시켜 국민경제활동의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完全履備이나 物價安定 등을 달성할 목적으로 통화당국이 취하는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통화당국이 한편으로는 政府가 주도하고 있는 輸出主導型 高度成長을 支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物價安定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론바 安定成長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利子率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通貨量, 즉 總通貨(M_2)를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利子率과 通貨量을 동시에 규제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불가능하다. 그러나 통화당국은 경제발전의 모체가 되는 企業의 金融費用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利子率의 上限을 설정하여 이 한도 내에서 금융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되 總通貨(M_2)를 조정함으로써 이론바 流動性規制를 실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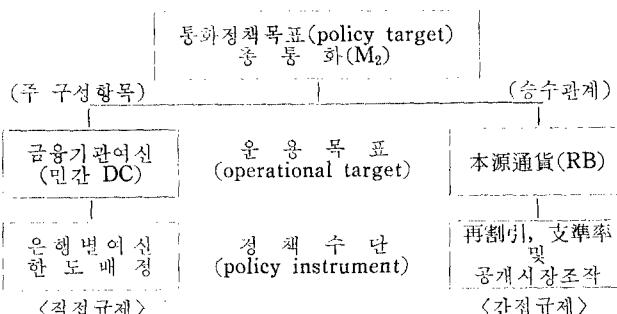
있는 것이다.

그리면 現行의 通貨管理制度는 效率的인 것인가? 또한 利子率의 策定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通貨政策과 利子率政策의 推移를 개관하고 金融政策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通貨政策의 推移

(1) 通貨管理 메카니즘과 各種 通貨指標

우리나라의 通貨management 메카니즘은 대체로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여러가지 通貨指標(RB, M₁, M₂, DC 등)에 대한 이해는 실제 通貨金融機關의 綜合貸借對照表를 살펴봄으로써 확실해진다. 〈표 2〉는 通貨金融機關의 綜合貸借對照表의 항목과 通貨指標를 연결시키



〈그림 1〉 通貨管理 메카니즘

〈표 2〉 通貨金融機關의 綜合貸借對照表와 通貨指標

資產	負債外資本
國內與信(DC)	中央銀行
◦ 政府與信	◦ 貨幣發行高 ◦ 現金通貨 ◦ 預金銀行保有時在金
◦ 中央銀行(對政府貸出金—政府預金)	RB
◦ 預金銀行(國民投資基金純預託金—國庫代理店 및 對政府借入金)	M ₁
◦ 政府代行機關(農協肥料計定)	M ₂
◦ 民間信用	◦ 支準預置金
◦ 貸出金	◦ 要求拂預金
◦ 外貨信用	◦ 貯蓄性預金
◦ 有價證券	◦ 居住者外貨預金
◦ 支給保證代給金	
◦ 其他	
純海外資產	
其他純資產(其他資產—其他負債)	
	$\Sigma = \Sigma$

資料：韓國銀行，『韓國의 金融政策』，1977

고 있다.

(2) 現行 通貨管理方式의 特徴과 그 背景

그리면 통화당국의 現行 通貨管理方式은 무엇인가?

통화당국은 먼저 實物經濟活動과 가장 상관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總通貨(M_2)의 일정증가율을 통화정책목표(monetary policy target)로 설정한다. 이때 總通貨의 목표증가율은 貨幣數量說에 입각하여 결정된다. 즉,

$$\dot{M}_2 = p + y,$$

\dot{M}_2 =總通貨(M_2) 증가율,

p =物價抑制目標 증가율,

y =實質 GNP 예상증가율

이 이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通貨當局은 物價抑制目標 증가율과 實質 GNP 예상증가율을 합한 수준에서 總通貨(M_2) 증가율을 결정한다.

1982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通貨管理方式은 종전의 民間信用(民間DC)限度管理에 의한 직접 규제방식에서 再割引, 支拂準備率, 公開市場操作 등의 正統的 通貨調節手段에 의한 간접 규제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통화당국이 總通貨(M_2)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개별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대출할 수 있는 限度를 설정함으로써 전체금융기관의 民間與信總量을 적정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직접규제방식이다. 즉 통화당국은 通貨管理에 있어서 總通貨(M_2)의 증가율 限度 내에서 通貨金融機關으로서는 규제할 수 없는 政府 및 海外部門資金과 限度管理對象外資金을 뺀 나머지 부분만을 각 은행별 民間信用限度配分이라는 수단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택하는 것이다.

여기서 民間信用限度管理外資金이란 아무런 제약 없이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을 民間信用管理對象에서 제외시킨 것인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④ 輸出支援金融
- ④ 中小企業特別資金
- ④ 防衛產業支援資金
- ④ 에너지節約施設資金
- ④ 輸出產業設備資金
- ④ 國產機械購入資金
- ④ 商業어음割引(中小適格業體 100%, 其他業體 50%)

◎ 其他 特殊資金(地方道路鋪裝事業費, 滯拂資金, 韓電外貨貸出, 不實現地金融整理資金 등)

이에 반해 간접규제방식은 中央銀行이 개별금융기관의 與信을 직접 할당하는 대신 中央銀行이 공급하는 本源通貨(RB)만을 조절하고 각 금융기관의 與信活動은 개별은행의 자율적 행동에 완전히 일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별금융기관의 與信은 예금경쟁 등을 통한 自己資金 조성능력에 따라 결정되나, 전체금융기관의 總與信規模는 中央銀行이 공급한 本源通貨(RB) 규모의 일정배수(승수) 이상으로 증가할 수 없다. 中央銀行은 再割引 및 公開市場操作 등을 통해 本源通貨(RB)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수의 크기도 支拂準備率操作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간접규제방식은 개별은행의 與信窗口를 직접규제하지 않고 간접적인 수단만으로 總通貨(M_2)를 조절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通貨管理方式이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정책의 指標 및 通貨管理方式이 그때 그때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다음의 〈표 3〉은 통화정책指標의 变천추이를, 그리고 〈표 4〉는 通貨管理方式이 直接規制와 間接規制의 교차 속에서 변화하여 왔음을 각각

〈표 3〉 通貨政策指標의 變遷趨移

기 간	정책지표	기 간	정책지표
1957~69상반기	通貨量(M_1)	1978	通貨量(M_1)
1969하반기	本源通貨(RB)	1979~현재	總通貨(M_2)
1970~77	國內與信(DC)		

資料：韓國銀行 内部資料

〈표 4〉 通貨管理方式의 變遷推移

年 度 別	管 理 方 式	管 理 手 段
1950. 6~53. 3	直 接 規 制	金融機關 貸出限度制(融資事前承認制 併行實施)
1953. 4~54. 3		韓國銀行 貸出限度制
1954. 4~55. 6		金融機關 貸出限度制
1955. 7~60. 5		韓國銀行 再割引限度制(融資事前承認制 併行實施)
1960. 6~65. 9		金融機關 貸出限度制
1965. 10~69. 6	間 接 規 制	正統的 規制手段
1969. 7~70. 6	直 接 規 制	金融機關 貸出內示限度制
1970. 7~78. 8	間 接 規 制	正統的 規制手段
1978. 9~81. 12	直 接 規 制	民間信用 限度管理制
1982. 1~	間 接 規 制	正統的 規制手段

자료：한국은행, 『주간내외경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通貨管理方式은 해방이후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전란 등으로 인한 급격한 通貨管理에 대처하기 위하여 1950년 6월부터 韓國銀行에 의한 融資事前承認制, 金融機關貸出增加限度制 등 강력하고 直接的인 通貨規制가 실시되었다. 그 후 이와 같은 直接規制는 韓國銀行貸出增加限度制 및 金融機關貸出最高限度制 등의 方式으로 1965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65年の 金利現實化措置 및 이에 따른 金融自律화의 물결에 副應하여 通貨管理方式도 間接規制方式으로 轉換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間接規制方式에 의한 通貨management는 實施初期부터 海外部門의 激烈한 通貨增加로 호된 시련을 빚게 되었으나 1976年 이후부터는 海外建設 붐에 主導된 外換事情의 好轉으로 海外部門을 통한 通貨增加壓力이 加重됨에 따라 再割 및 支準 등 正統的 通貨政策手段에 의한 通貨management의 限界가 露呈되었다. 이와 같이 외부적인 변화로 인해 통화팽창이 일어났지만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1978년부터 銀行別 民間信用限度制에 의한 直接規制方式의 通貨management가 實施되게 되었다.

그런데 1978년부터 제도화된 純粹 규제방식의 通貨management는 통화증발의 억제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은행별 與信限度管理를 장기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개별은행의 與信에 대한 적절규제는 금융기관 간의 자유경쟁과 개별은행의 자율적 與信運用을 저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逆作用을 했다.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이 있는 은행이나 없는 은행이나 개별은행에 대한 與信限度 내에서만 與信을 취급할 수 있게 되자 개별은행은貸出能力을 무시하고 與信限度 내에서 먼저貸出을 하고 나서 부족자금을 사후적으로 中央銀行에 시의 借入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생겼다. 이러한 慣行은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의식을 회복하게 하여 효율적인 자금배분과 金融自律化 추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은행별 與信限度配定에 있어서 輸出金融을 비롯한 각종 政策資金에 대해서는 이限度外로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限度外의 政策資金에 대한 過多需要를 유발시키고 이와 같은 資金의貸出增加는 限度內 일반자금貸出餘力を 위축시켜 자금배분의 비효율성은 물론 탄력적인 通貨management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3) 現行 通貨management의 問題點 및 對策

通貨management方式이 純粹 규제에서 간접규제로 바뀜에 따라 금융정책의 유효성은 제고될 것인가? 필자의 견해는 간접규제방식이 금융정책의 유효성제고에 한계적 기여는 할 수 있을지 인정 당장에 큰 효과를 내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通貨management를 純粹 규제 방식으로 하든 간접규제 방식으로 하든 현행의 management方式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

문이다.

현행의 通貨管理方式은 그것이 직접규제이든 간접규제이든 간에 貨幣數量說에 의거하여 總通貨(M_2)의 목표증가율을 설정하여 놓고 맹목적으로 이를 고수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貨幣數量說의 有用性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이론이 19세기의 古典的 資本主義經濟의 설명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되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기한 경제를 설명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케인즈가 지적한대로 貨幣數量說의 接近은 貨幣支出의 방향을 구별하지 않고 이를 일괄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貨幣의 흐름(money flow)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貨幣支出의 방향을 문제로 하자 않을 때에는 결국 貨幣를 中立的으로 보는 貨幣 배일觀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며 實物經濟와의 작용을 떠나고 있으므로 결국 貨幣數量說은 貨幣變動의 靜態論的 說明에 불과하다. 따라서 通貨量의 變動이 價格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까지의 각 단계에 대한 分析을 행할 수가 없으므로 貨幣數量說로써는 經濟現象에 대한 動態分析이 불가능하다.

이와 아울러 현실의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不確實性이 존재하므로 각 경제주체들은 나름대로의 期待(expectation)를 형성하게 된다. 장래에 대한 각 경제주체들의 期待는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바, 이때 現在와 未來를 연결시키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貨幣이므로, 貨幣理論에서는 당연히 期待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貨幣數量說은 不確實性이 존재하지 않는 架空의 世界(確實性的 世界)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貨幣數量說을 현대 경제에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것이 비록 타당성 있는 이론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한계성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는 政策金融이 많아서 通貨management이 직접규제에 의한 것인 간접규제에 의한 것인 간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通貨management이 직접적 규제에 의한 것인 때에는 民間信用限度對象에서 제외된 資金의 需要가 증대하여 규제대상범위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信用調節의 硬直化現象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하였거니와, 通貨management이 간접적 규제에 의한 것인 때에는 각 금융기관의 與信活動이 개별은행의 자율적 행동에 완전히 일임되기 보다는 政策金融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기대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通貨management의 유효성에는 자연히 限界가 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간접적 규제에 의한 通貨管理는 그 유효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 바 위에서 지식한 政策金融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도 公開市場操作을 위해서 貨幣市場이 육성되어야 하고, 財政證券, 通貨安定證券 등 公開市場對象證券의 확충이 시급하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서 公開市場操作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이나 영국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는 당분간 支拂準備率操作과 再割引, 다시 말해서 中央銀行貸出이 통화정책의 大宗을 이를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현재의 通貨管理方式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硬直的인 貨幣數量說의 思考의 불식과 政策金融의 축소가 요청되며 이에 더하여 貨幣市場의 육성과 公開市場操作對象證券의 확충이 시급하지만 이것이 달성되기까지는 中央銀行이 경제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貸出決定을 험명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中央銀行의 「제 3 차적」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2. 金利政策

(1) 金利政策의 變遷

우리나라의 金利政策의 變遷推移를 살피는 데는 두 가지 觀角이 있을 수 있다. 名目利子率의 變化에 주목하는 것과 實質利子率 즉 名目利子率에서 物價上乘率을 뺀 利子率의 變化를 보는 것이 그것이다.

從來의 대부분의 研究는 實質利子率의 變化를 中心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의 저변에는 金融市場에서의 貨幣幻想(money illusion)의 不在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利子率政策의 主要 傳播經路(transmission mechanism)인 利子率變化가 投資決定에 미치는 영향을 中心으로 보면 결국 企業家들이 特定 投資의 收益性을 검토할 때 고려하는 利子率은 物價水準을 감안한 實質利子率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實質利子率中心의 견해는 現實의 企業行態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企業이 重視하는 것은 物價上乘率을 감안한 利子率이기보다는 名目利子率에 의해決定되는 總名目利子負擔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現實의이라 생각된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金利水準 變化推移를 高利子率期間과 低利子率期間으로 區分해 볼 때 實質利子率, 名目利子率 그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事實上 그 區分期間에 있어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도 名目利子率에 의한 金利推移考察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表 5〉 우리나라의 金利推移

(단위 : %)

	金融機關			定期預金 (1年以上 満期)	韓國銀行		
	貸出金利		一般資金 (1年以内)		商業어음 割引	輸出어음	
	商業어음 割引	輸出金融					
1964. 3. 16	14.0	8.0	16.0	15.0	10.5~11.5	4.5	
6. 8	14.0	8.0	16.0	15.0	10.5~11.5	3.5	
1965. 9. 30	24.0	6.5	26.0	26.4	10.5~11.5	3.5	
11. 16	24.0	6.5	26.0	26.4	21.0	3.5	
12. 1	24.0	6.5	26.0	26.4	28.0	3.5	
1967. 6. 29	24.0	6.0	26.0	26.4	28.0	3.5	
1968. 3. 1	24.0	6.0	26.0	26.4	21.0	3.5	
10. 1	26.0	6.0	25.2	25.2	21.0	3.5	
1969. 6. 1	24.6	6.0	24.0	22.8	22.0	3.5	
1970. 4. 1	24.0	6.0	24.0	22.8	21.0	3.5	
12. 3	24.0	6.0	24.0	22.8	19.0	3.5	
1971. 6. 28	22.0	6.0	22.0	20.4	16.0	3.5	
1972. 1. 17	19.0	6.0	19.0	16.8	13.0	3.5	
8. 3	15.5	6.0	15.5	12.0	11.0	3.5	
1973. 5. 14	15.5	7.0	15.5	12.0	11.0	3.5	
1974. 1. 24	15.5	9.0	15.5	15.0	11.0	3.5	
1975. 4. 17	15.5	7.0	15.5	15.0	11.0	3.5	
10. 1	15.5	7.0	15.5	15.0	14.0	3.5	
1976. 8. 2	18.0	8.0	18.0	16.2	14.0	3.5	
1977. 7. 1	16.0~19.0	8.0	17.0	16.2	10.0~15.0	3.5	
10. 4	16.0~19.0	8.0	16.0	14.4	10.0~15.0	3.5	
1978. 6. 13	19.0	9.0	19.0	18.6	15.0	4.0	
1980. 1. 12	25.0	12.0	25.0	24.0	21.0	7.0	
6. 5	24.0	12.0	24.0	24.0	20.0	7.0	
9. 16	22.0	12.0	22.0	21.9	18.0	7.0	
11. 8	20.0	12.0	20.0	19.5	16.0	7.0	
1981. 11. 9	19.0	12.0	20.0	18.6	15.0	7.0	
11. 30	18.0	12.0	18.0	17.4	13.0	7.0	
12. 29	17.0	12.0	17.0	16.2	11.0	5.0	
1982. 1. 14	16.0	12.0	16.0	15.0	7.0	5.0	
3. 29	14.0	11.0	14.0	12.6	5.5	5.0	
6. 28	10.0	10.0	10.0	8.0	5.0	5.0	

資料：韓國銀行, 『經濟 통계 연보』(各號)

수 있다.

名目金利의 變化에 따라 우리나라의 金利推移를 살펴 보면 〈표 5〉와 같다. 1965년 9月, 회기적인 金利政策의 變化 즉 金利現實化가 단행되었는데, 이는 利子制限法의 最高限度가 원 20%에서 40%로 개정되면서 단행되었다. 이때預金의 最高利率은 원 15%에서 30%로

을랐을 뿐만 아니라 貸出金利의 水準이나 構造도 变動되었다. 이에 의해서 우리나라是一般銀行의 預金最高金利가 貸出金利보다 오히려 높은 逆金利現象을 보여 金融機關의 收支를 악화시켰고 企業의 金利負擔이 加重되었다는 批判이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金利의 下向調整이 모색되어 1968년 3월과 10월의 두 차례를 거쳐, 1969년 6월에는 제3 단계의 金利下向調整이 행해져서 逆金利體制는 해소되었는데 그 이후도 한동안 金利의 下向調整이 있었다.

그 후 1976년 8월, 그리고 1978년 6월 金利가 약간 인상되었으나 별로 획기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1980년 1월 第2次 石油波動에 따른 급격한 物價上乘 전망에 따라 金利도 대폭 引上되었으나 같은 해 6월부터는 침체된 國內景氣活性化를 위해 여러 차례의 金利引下가 있었다.

1960년대 이후의 이러한 金利推移를 1965년 9월의 金利現實化 이후 1972년 8.3措置로 移行되는 時期 즉 1972년 1월부터 8.3조차 직전까지의 1年以內一般資金貸出金利 및 一般業體에 대한 銀行의 商業어음割引率이었던 年 19%를 기준으로 高金利期間과 低金利期間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그 基準의 다소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따르면 대체로 1965년 9월 30일부터 1972년 8.3조차 직전까지의 期間과 1978년 6월의 金利引上時부터 1981년 11월 30일의 金利引下 직전까지의 期間은 高金利期間으로 특징지울 수 있으며 그 외의 기간 즉 1965년 9월 金利現實化 이전의 기간과 1972년 8.3조차 이후 1978년 6월 金利引上 직전까지의 기간 또 1981년 11월 30일 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相對的으로 低金利期間으로 推定해 볼 수 있다.

(2) 金利政策의 特徵 및 問題點

이상과 같은 역사적 특성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金利政策은 어떤 특징과 問題點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現行 金利政策의 特徵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利子率이 통화당국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통화당국은 利子率의 上限線만 설정해 놓고 그 限度內에서는 어떤 利子率이 적용되어도 무방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資金의 超過需要가 항상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에서는 이론적으로 볼 때 통화당국의 上限利率은 곧 實行利率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형식적으로 金融通貨運營委員會는 銀行預金金利의 경우는 科目別로 나누어 最高金利를 정하는 한편, 貸出金利의 경우 基準金利(우량업체에 대한 상업어음割引金利)를 정하고 구체적인 實行利率은 金融團協定에 의해 銀行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

적으로 最高金利와 基準金利를 결정할 때 預金期間別 또는 貸出期間別 實行金利도 동시에 결정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最高金利 뿐만 아니라 實行金利까지도 정책당국이 직접 결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나도 전반적인 金利水準 자체를 市場實勢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적인 판단의 所產이겠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항상 金利體系의 合理性缺如問題로 발전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당국에 의한 實行金利變更은 동시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특수목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시점에서 보면 항상 金利體系의 歪曲問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金利는 金融調節手段으로서 보다 다른 經濟施策의 보완수단으로서 운용되고 있는 면이 많다. 예를 들면, 輸出, 觀光振興, 防衛產業, 主要原資財輸入 등을 금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해서는 一般金融보다 과격적으로 낮은 金利를 적용함으로써 金利調節對象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으며 따라서 金利政策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세째, 與信金利는 기업의 投資促進 및 金融費用의 負擔輕減에 치중하여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景氣過熱이나 物價上昇時에도 金利의 資金需要調整機能은 무시되어, 受信金利는 與信金利의 경직성에 제약되어 物價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非彈力的으로 운용하여 陰(一)의 實質金利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3) 金利政策의 改善策

그러면 金利政策은 어떻게 개선시키면 되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學者나 實務家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합의는 첫째, 지금까지에 있어서처럼 人爲的으로 고정되어 있는 金利는 自由化 또는 彈力化되어야 하며, 둘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歪曲되고 복잡한 金利構造는合理的으로 單純화시켜야 하고, 마지막으로 與受信金利의 差는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나중 둘은 만약 金利의 自由化 또는 彈力化的 原則만 채택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金利論議는 자연히 첫째번의 과제에 초점을 둘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먼저 金利決定 메카니즘에 있어서 金融通貨運營委員會에 의한 金利의 一元的 決定과 金融機關의 自律的 決定機關을 강화함으로써 金利政策의 彈力性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金融通貨運營委員會는 最高金利만을 貸出形式別, 즉 상업어음割引, 어음貸出, 當座貸越, 延滯貸出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金融機關은 이 범위內에서 優待金利(信用危險이 가장 작은 우량기업에 대한 金利), 基準金利(信用危險이 비교적 작은 평균수준의 업체에 대한 金利), 其他金利(信用危險이 비교적 큰 평균 이하의 업

체에 대한 金利)를 自律的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政策金融의 金利는 輸出支援金融에 限하여 韓國銀行의 指導下에 金融團協定으로 결정하여 적용한다.

또한 韓國銀行再割引金利를 외국의 公正割引率과 같은 기능을 하게 할 목적으로 標準金利를 설정하고 모든 韓銀貸出金利를 이 標準金利와 連動하도록 결정하되(標準金利土 α) 韓銀金利는 國內 景氣變動, 國際金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獨立적으로 变동시키고 금융 기관의 여러가지 貸出金利는 韓銀標準金利 $+\beta$ 가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預金金利에 대해서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物價動向을 감안하여 最高金利를 伸縮的으로 변경시키고 金融機關 實行金利는 最高金利限度內에서 金融團協定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銀行의 自律的 運營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貨幣市場이나 資本市場에 있어서 競爭原理의 도입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우리의 실정으로서는, 金利의 完全自由化는 공연한 혼란만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또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成長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金利의 完全自由化는 당분간은 時期尚早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金利의 完全自由化가 아니라 一定範圍內에서 韓國銀行이 정하는 標準金利를 중심으로 은행의 裁量에 의하여 金利가 伸縮的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彈力性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金利에 彈力性을 부여한다는 것이 中央銀行이 金利政策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金利의 彈力化란 金利를 인위적으로 一定水準에서, 非伸縮的으로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며 中央銀行이 전통적인 金融政策手段을 구사하여 市場金利의 水準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필요성은 金利彈力化的 政策基調가 채택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는 것이다. 中央銀行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언제고 標準金利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다.

III. 金融改革의 原則과 方向

이제까지의 논의, 즉 韓國經濟의 成長過程과 金融 및 金融政策의 推移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韓國金融의 改革에 관한 原則과 方向을 모색해보기로 하자.

1. 金融改革의 原則

金融部門의 後進性은 實物部門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金融部門을 外面한 基本實物部門만이 獨自의으로 발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金融部門의 落後가

實物部門의 발전에 대한 障碍要因이 빠지 않도록 金融部門을 잘 정비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落後되어 있는 것은 金融部門 뿐만 아니라 實物部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實物部門 또한 金融部門 못지 않게 改革이 필요하다. 오히려 實物部門이 金融部門보다 더욱 절실히 改革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金融이 오늘날과 같이 위축되어 있는 이유는 金融自體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實物部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企業의 生成 폐카니즘이나 그것을 뒷받침하여 온 經濟發展戰略과 手段이 必然的으로 金融으로 하여금 오늘날의 樣相을 띠게 만든 것이다.

지난 20年間 우리나라 經濟는 그 規模面에서 크게 成長하였고 그 構造面에서도 高度化되어 政府는 더 이상 經濟의 모든 部門에 干與할 能力이 없으니 설혹 干與한다 해도 기대하는 目的을 달성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經濟運營은 可能한 市場機構에 맡기는 쪽으로 方向舵를 돌려야 할 것인 바 이 때야 비로소 金融改革을 진지하게 論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위와 같은 條件이 성숙되었을 때 金融改革은 어떤 方向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金融改革은 다음과 같은 原則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金融改革은 金融機關의 企業性과 公共性의 調和를 추구하는 데 力點을 두어야 한다.

둘째, 急進的인 方法보다는 段階的으로 現實에 맞게 改革을 試圖해야 한다.

세째, 金融產業에 있어서의 政府의 役割은 全的으로 否定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새로운 角度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金融機關의 企業性과 公共性은 具體的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金融機關은 基本的으로 私企業이다. 私企業는 여러가지 目的과 함께 利潤追求를 위해 활동한다. 따라서 金融機關은 利潤極大化를 위해 努力하게 된다. 만약 金融機關이 利潤을 올리지 못하면 그 存在價值를喪失하고 만다. 또한 金融機關은 資本主義經濟의 重要한 構成要素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私企業으로서의 金融機關이 存在하지 않는 資本主義經濟는 도저히 想像할 수도 없다. 金融機關은 또한 公共性을 지니고 있다. 公共性이란 다음이 아니고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여러가지 役割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 內容으로 중요한 것은 特히 다음의 세 가지이다. 하나는 成長通貨를 充分히 供給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貸出審査를 잘 해서 그것을 效率的으로 配分하는 役割이며 마지막으로는 民間의 貯蓄과 投資를 連結시키는 金融仲介機能을 원활히 수행하는 役割이다. 이렇게 되면 金融機關이 非

인플레이션의in 방법으로充分한成長通貨를供給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金融機關의企業性과公共性에 모두該當되는 문제로서 金融機關의安定性이 있다. 이것은 金融機關의支拂能力으로 나타난다. 現代金融理論에 따르면 支拂能力은 金融機關의資產의市場價值가負債를凌駕하느냐 않느냐로判別할 수 있다.

金融機關이繼續企業으로存續하려면 支拂能力을保有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支拂能力은 바로企業性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金融機關이 支拂能力을잃게 되면 다른金融機關도 이것을잃게되는連鎖反應이일어날 수 있으며 그結果信用制度全體가흔들릴 수도있다는 의미에서, 支拂能力은 또한公共性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므로 金融機關은私企業의立場에서 높은利潤을올리고公企業의立場에서成長通貨를供給하되, 될 수 있으면金融仲介의方法으로供給하고,貸出審查를철저히하며,同時に충분한支拂ability을維持할 것이 요구된다.

한 나라의金融制度나金融運營은過去의여러가지社會經濟的經驗이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一時에改革하려는試圖는成功하기보다는失敗하기가 쉽다.金融改革은 단한번의機構改廢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오직 모든關係人事나機關들의不斷한努力을 통해一步一步 차실히 이루어질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金融改革은急進的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段階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金融改革後의金融機關과政府의關係는 어떻게定立되어야 하는가?⁽⁴⁾

自律性의確保가金融機關의融資方向에 대한政府政策의影響力を완전히排除하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經濟는 아직도後進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政府는一貫된비전을갖고民間部門을바람직한방향으로誘導할필요가있다. 사실私企業들이마음직한國民經濟의發展方向을透視하고그에副應할수있는領域을확실히알아서投資를한다거나私企業으로서의金融機關이언제나國民經濟의立場에서貸出業務을수행할것을期待한다는것은지나치다고밖에할수없다. 따라서政府는金融機關의業務에대하여直接的인統制를加하지는않지만一貫性있게產業政策의方向을확립하고金融機關은貸出審查過程에서企業들로하여금國民經濟에妥當한領域에優先적으로投資할수있도록誘導해야 할것이다. 다시말해서政府는產業政策의基礎를확립하고金融機關은이政策方向에입자하여業務를수행하는分業體系가이루어져야한다.

(4) 새로운金融風土下에서의政府와金融機關間의關係에관하여는趙淳,『韓國經濟의現實과進路』,比峰出版社, 1981 가운데서『金融自律化와金融經濟의展望』参照.

2. 金融改革의 方向

우리 나라의 金融制度가 장기적으로 건전한 發展을 하려면 具體的으로 어떤 改革이 필요한가? 이에 관한 논의를 韓國銀行의 自律化, 一般銀行의 自律化, 政策金融의 개편, 非銀行金融制度의 개편으로 나누어서 전개해 보기로 하자.

(1) 韓國銀行의 自律化

韓國銀行은 通貨의 管理와 金融政策의 수립, 집행이라는 特別한 目的下에 設立되었으나, 1962년의 韓銀法改正 이후 그 주요기능의 대부분이 재무부로 移管되면서부터 재무부의 한 산하기관처럼 되어 버렸다.

經濟成長政策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獨立된 중앙은행의 存在는 政府로 볼 때 가치장스러운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中央銀行이 金融政策의 樹立과 執行에 있어서 自律性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中央銀行의 存在價值는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재무부와 韓國銀行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분업과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배와 종속의 상태에 미몰려서는 안된다.

그러면 中央銀行의 自律性은 왜 必要한가?

첫째, 金融政策은 長期間의 경향과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일상업무를 통해서 金融에 대한 이해와 갑각을 습득한 韓國銀行의 전문가들이 政策樹立에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것이 財務部官吏들이 동원되는 것보다 낫다.

둘째, 金融政策은 經濟全體의 可用資金의 配分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각계의 경험과 의견을 대표하는 合議制機構인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이를 樹立하는 것이 財務部가 樹立하는 것보다 낫다.

세째, 通貨價值의 安定은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 꼭 必要한 것인데 財務部의 韓銀에 대한 영향력이 강력할 경우 정치에 좌우되기 쉬운 財務部는 일시적 成長과 安定 가운데서 成長을 선택하고 物價는 둘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도 中央銀行의 自律性이 必要하다.

네째, 지난 20年間의 經濟運用經驗에 비추어 볼 때 財務部가 韓銀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通貨增發의 方法에 의한 무리한 開發計劃과 政策을 수립할 가능성이 많고 또 財務部의 金融機關에 대한 간섭은 金融部門의 自律的 發展을 저해할 우려가 많다. 그런데 金融機關의 發展 없는 資本主義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金融機關의 發展을 위해서도 韓國銀行의 自自律性이 필요하다.

韓國銀行의 自自律化를 위해서는 具體的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첫째, 金融通貨運營委員會는 金融政策을 運營, 管理하는 機關이 아니라 金融政策 그 自體를 樹立하는 機關임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中央銀行의 頂上이라고 할 수 있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의장을 재무부장관에서 韓銀總裁로 교체하며 財務部의 당연직 委員은 재무부장관 대신 재무부차관으로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은 계속해서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再審要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세째, 韓國銀行의 内部經營을 간섭하는 財務部의 시달을 모두 폐지한다. 즉, 韓國銀行의 예산면, 조직면, 인사면, 보수면에서의 獨立을 해치는 어떤 法規도 이를 폐지해야 한다.

그런데 韓國銀行의 自律性이 회복되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資金의 供給이 덜 이투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韓國銀行과, 韓國銀行의 지도 감독을 받는 金融機關이 第二次的 審查機能을 더 強化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資金의 供給量과 資金配分의 效率性間에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관계가 存在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資金供給의 감소가 實物經濟의 무리한 經濟計劃을 저지시킨 結果라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며, 또 資金供給의 감소가 인플레이션의 可能性을 감소시켜줄 수만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資金의 供給量과 效率性 사이에 逆의 關係가 存在한다. 하더라도 效率性提高의 크기가 資金供給量 감소의 크기보다 크다면 이는 바람직한 현상인데, 韓國銀行의 自律化가 이런 바람직한 現象을 가져다 줄 可能性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韓國銀行의 自律化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制度의 改善이라기 보다는 政府政策의 基本方向의 轉換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政府가 만약 經濟를 效率的으로 움직이고 싶은 의지만 굳게 갖고 있다면 韓國銀行의 自律性保障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制度를 고쳐 놓아도 이를 運用하는 데 있어서 自律화와는 反對方向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一般銀行制度의 改編

一般銀行은 現在 銀行法을 비롯하여 韓國銀行法, 金融機關監督規程, 金融機關資金運用規程, 輸出金融規程, 輸入金融規程, 外貨貸出取扱規程 등 수없이 많은 法規에 의한 統制를 받고 있다. 이러한 諸法規는 一般銀行의 活動範圍와 一般銀行의 性格을 規定지워 준다. 여기서는 이를 가운데서 가장 基本이 되는 銀行法을 中心으로 一般銀行에 대한 統制의 改善方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一般銀行은 私企業의 立場에서 높은 利潤을 올리고 公企業의 立場에서 成長通貨를 충분히 供給하되 金融仲介의 方法으로 供給하고, 貸出審查를 철저히 하며,

同時に 充分な 支拂能力を 維持할 것이 요구된다.

統制의 内容이 어떠한 方向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統制가 一般銀行의 機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分析한 然後에야 論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서는 먼저 銀行法을 進入制限(entry restriction), 貸借對照表制約(balance sheet constraint), 活動制限(activity restriction), 利子率에 대한 制約(pricing constraint)와 監督 및 檢查로 나누어 보고 이러한 統制가 一般銀行의 支拂能力, 企業性, 成長通貨의 供給 및 金融仲介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分析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을 토대로 一般銀行에 대한 統制의 方向은 어떻게 전환시키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論議가 이루어질 것이다.

一般銀行에 대한 여러가지 統制가 一般銀行의 機能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⁵⁾

〈표 6〉 一般銀行에 대한 統制의 영향

	進入制限	貸借對照表制約		活動制限	利子率制約	
		資本金	準備金		예금이자율	대출이자율
支拂能力	- (?)	+(?)	+	? (+)	+	+
企業性(利潤)	+	-	--	-	+	-
成長通貨供給	-	- (?)	- (?)	-	- (?)	- (?)
金融仲介 {受信 與信}	-	+ (?)	+	? (+)	? (-)	? (+)
	-	-	-	-	-	-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一般銀行에 대한 統制가 一般銀行의 機能에 미치는 영향은 그 方向이 不確實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一般銀行에 대한 統制가 一般銀行의 機能에 미치는 效果가 불확실하다면 一般銀行에 대한 統制를 고려할 때 이를 매우 실증적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미 統制가 기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統制의 방향을 전환함에 있어 시도 統制를 선별리 풀거나加重해서 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實物部門에서 民間主導가 이루어지면 經濟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金融部門도 이를 과감히 따라야 하며 어떤 具體的인 統制가 분명히 一般銀行의 企業性과 公共性을 동시에 해치는 것이라면 이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5) 一般銀行에 대한 여러가지 統制가 一般銀行의 機能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하기 위해 사용된 理論的 모델은 趙淳外 7人, 『一般銀行制度의 改編方向에 관한 研究』, 한국은행, 1981 가운데서 제 3장 제 4절 「統制의 效果—理論的 分析」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例를 들면 銀行法 第7條 ②項⁽⁶⁾은 거의 死文化되다시피 하였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一般銀行의 自律的 經營을 해친다는 뜻에서 企業性에 陰(一)의 效果를 가져다 주고 동시에 資金의 效率的 配分을 저해한다는 의미에서 公共性에도 陰(一)의 效果를 가져다주므로 이 기회에 이것을 정리하여 統制當局이 一般銀行에 介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一般銀行은 中央銀行인 韓國銀行의 지도 감독만 받으면 되고 財務部의 지도 감독은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一般銀行이 독자적으로 韓銀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貸出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좀 더 具體的인 문제로 들어가서 銀行의 新設 및 大型化, 合作銀行의 設立, 그리고 銀行業의 分業主義와 業業주의, 이자율통제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① 銀行의 大型化와 新設

제5차 經濟開發計劃에 의하면 政府는 金融機關의 力量의 載重을 도모하기 위하여 銀行收支의 改善을 통한 實質增資를 실현함으로써 銀行의 大型化를 지향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銀行規模의 영세성탈피를 위하여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銀行業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가 작용하는 정도는 실제로 많이 과장되어 있다. 小型銀行과 中型銀行의 사이에는 比較的 顯著한 規模의 經濟의 作用이 있으나 中型銀行과 大型銀行 사이에는 그 作用이 크지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 銀行業의 內實도 기하지 않고 規模의 확대를 먼저 서두르는 것은 언뜻 수긍이 안간다.

그보다는 오히려 競爭原理를導入한다는 原則下에 新參銀行의 設立을 許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銀行業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기존은행의 收支에는 불리할지 몰라도 이로 인해 全體銀行制度의 支拂能力과 公信力提高에 유리한 효과가 기대되며,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볼 때도 진입장벽의 제거는 成長通貨의 供給이나 金融仲介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② 合作銀行의 設立

政府는 經濟의 對外信認度와 外貨調達窓口 및 調達方式의 다양화 그리고 先進金融技法의導入 및 金融機關間의 경쟁촉진을 통한 國內金融機關의 體質改善을 目的으로 몇개의 外國合作銀行을 設立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이들의 經濟的 效果를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순전히 一般銀行에 대한 統制面으로 볼

(6)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은 韓國銀行法과 이 法에 따라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管掌 規制하는 事項을 裁외하고 金融機關의 經營과 그 健全한 運營을 위해 必要한 명령 또는 指示를 할 수 있다.」

때 合作銀行이건 國內銀行이건 간에 새로운 銀行의 設立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여러가지 좋은 效果 즉 支拂能力提高, 成長通貨供給, 金融仲介機能擴大에 陽(+)의 效果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은행의 收益性은 떨어질 것이 분명하며 그 정도가 심해지면 支拂能力마저도 저해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合作銀行은 기존의 銀行들과는 相異한 구조와 경영방식을 가지고 設立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기존은행과 新設銀行이 資產과 負債構成에 있어서 類似性을 유지하기란 힘들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列舉한 陽(+)의 效果도 그 신빙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한편 政府가 目標로 하고 있는 先進金融技法의 導入에 관해서는 銀行業은 서어비스業이라 제조업과는 달리 技術導入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合作銀行에 대해서는 國제經濟학에서의 幼稚產業保護論에 입각하여 이를 좀 더 신중히 다루라고 권장하고 싶다.

③ 銀行業에서의 分業主義와 混業주의

한 金融機關이 상이한 金融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混業주의(universal or mixed banking), 그리고 각 金融機關이 독특한 金融서비스만을 수행하는 것을 分業주의(specialized or sound banking)라고 하는데 一般銀行에 대한 統制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活動制限과 관련된다.

活動制限은 支拂能力과 受信活動에 대한 效果만 그 方向((+)) 또는 ((-))이 不分明할 뿐 다른 모든 一般銀行의 機能에 陰((-))의 영향을 미치므로 이것을 제거하여 混業주의를 채택하라고 원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도 신중한 接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 하에 一般銀行의 周邊業務에 대해서는 統制를 과감히 풀되 投資銀行業務의 混業에 대해서는 계속 統制할 것을 권고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周邊業務는 商業銀行의 원관업무로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例外 없이 商業銀行에서 直營 또는 間接投資에 의해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例外적으로 商業銀行의 周邊業務 混영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반면 投資銀行業務의 混영에 대해서는 전세계가 크게 分業主義나 混業주의로 나뉘어서 어느 것이 옳다는 객관적 기준은 미비하다.

둘째, 金融이란 원래 國民經濟의 效率性을 제고시켜주지만 國民經濟의 安定性을 해칠 소지를 안고 있다. 一般銀行이 混業은행으로 되면 不安定性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混業하는 것 중 한 군데에서라도 不實要因이 생기면 이것이 다른 업무에 파급효과를 미

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意味에서도 一般銀行의 業務은행화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④ 利子率統制

利子率統制은 一般銀行의 支拂能力提高에는 도움이 되지만 成長通貨供給과 金融仲介機能에는 그 效果가 不分明하거나, 陰(−)의 方向으로 작용한다. 한편 企業性은 預金利子率制約時は 陽(+)의 方向으로, 그리고 貸出利子率制約時は 陰(−)의 方向으로 反應함이 밝혀졌다.

利子率制約의 方向은 실제로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가?

利子率은 그 水準에 있어서나 體系에 있어서나 改善할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金利政策에 대해서는 대체로 ④ 지금까지와 같이 人爲的으로 固定되어 있는 金利는 自由化내지 彙力化되어야 하며, ④ 지금과 같은 복잡한 金利構造는 단순화되어야 하고, ④ 預金·貸出金利의 差는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 등 상당히 廣範圍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政策金融의 改編

① 政策金融의 概念

銀行法에 의한 一般銀行의 統制가 金融制度上의 統制라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政策金融에 의한 一般銀行의 統制는 制度運營上의 統制라고 할 수 있다.

政策金融이란 政府가 經濟開發計劃 등 特定政策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金融面에서 一般商業金融을 質的 또는 量的으로 補完함으로써 特定部門에의 資金流入을 意圖의으로 增大시켜 當該部門을 育成시키기 위한 選別的인 金融政策手段을 말한다. 여기서 質的 補完이란 特別低利 等 金利面에서 優待하는 것을, 그리고 量的 補完이란 韓國銀行再割支援 等 金融 어베일러빌리티(availabilty)面에서 優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 70年代에 여러가지 政策金融機關(產業銀行, 農業協同組合,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 水產業協同組合, 住宅銀行, 輸出入銀行, 土地金庫 等)을 設立하여 一般銀行이 商業베이스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分野를 專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後에 經濟計劃의 性格이 物量的 目標達成 위주로 變質하게 되자 그것을 위하여 一般銀行에 대하여도 各種 政策金融貸出制度를 必要한대로 制定하였으며 마침내는 이들 融資에 관한 一般銀行의 意思決定權을 실질적으로 박탈함으로써 一般銀行은 政策金融의 配給窗口로 된 感을 금할 수 없게 되었다. 〈표 7〉에 나타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一般銀行貸出의 60% 以上이 政策金融의 形태를 취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를 차지하는 一般金融도 정부의 指示에

〈표 7〉 정체금융 촍이

(단위 : 백만원, %)

금융기관 차급 (연말기준) 기간	I. 예금 운행			II. 한국산업 운행			III. 수출입 정체금융총액 수출액		
	(1) 정체금융 1) 금융자금 2) 차금 3) 저부록 자금	(2) 일반금융 4) 외화대출	(3) 대출액	(1) 정체금융 1) 금융자금 2) 차금 3) 저부록 자금	(2) 일반금융 4) 외화대출	(3) 대출액	(I(1)) + II + III)	(I(3)) + II + III)	
1960 2,675 (10,889)	1,379 (5,047)	1,025 (3,752)	— (2,090)	571 (31,092)	8,495 (41,981)	11,470 (58,019)	15,852 (68,908)	18,827 (68,908)	27,322 (100,000)
1961 18,698 (35,813)	7,573 (14,505)	10,024 (19,199)	— (2,109)	1,101 (25,384)	13,253 (61,197)	31,951 (38,803)	20,259 (74,616)	38,957 (69,811)	52,210 (100,000)
1962 22,815 (33,789)	9,223 (13,659)	12,862 (19,019)	— (1,081)	730 (30,189)	20,384 (63,978)	43,199 (36,022)	24,323 (69,811)	47,138 (69,186)	67,522 (100,000)
1963 25,445 (33,115)	10,907 (14,220)	14,538 (18,954)	— (30,814)	— (30,814)	23,634 (63,988)	49,079 (36,012)	27,621 (69,186)	53,066 (69,186)	76,700 (100,000)
1964 29,422 (31,700)	11,328 (13,360)	14,989 (17,678)	— (3,662)	3,105 (27,870)	23,631 (62,569)	53,052 (37,431)	31,738 (72,131)	61,160 (72,131)	84,790 (100,000)
1965 45,062 (41,399)	26,505 (24,350)	15,595 (14,327)	— (3,477)	2,962 (2,721)	27,002 (24,807)	72,064 (66,205)	36,785 (33,795)	81,847 (75,193)	108,849 (100,000)
1966 67,161 (44,976)	44,316 (29,677)	17,653 (11,822)	— (3,477)	5,192 (23,792)	35,527 (23,792)	102,688 (68,768)	46,638 (31,232)	113,799 (76,208)	149,326 (100,000)
1967 93,133 (40,419)	37,939 (16,465)	25,016 (10,857)	— (13,097)	30,178 (36,830)	84,865 (77,249)	177,998 (22,751)	52,423 (63,170)	145,556 (63,170)	230,421 (100,000)
1968 156,075 (39,250)	67,016 (16,853)	34,409 (8,633)	— (13,744)	54,650 (44,015)	175,141 (83,295)	331,216 (16,705)	66,425 (55,955)	222,500 (55,955)	397,641 (100,000)
1969 234,338 (32,266)	114,649 (15,787)	52,518 (7,231)	— (9,248)	67,161 (54,501)	395,808 (86,767)	630,136 (13,233)	96,104 (45,499)	330,432 (45,499)	726,240 (100,000)
1970 364,842 (38,291)	190,575 (20,001)	72,871 (7,648)	— (10,642)	101,396 (48,173)	459,000 (86,465)	823,842 (13,335)	128,965 (13,335)	493,807 (51,827)	952,807 (100,000)
1971 508,053 (41,160)	268,790 (21,776)	81,948 (6,639)	— (12,745)	157,315 (46,080)	568,784 (87,241)	1,056,827 (12,759)	157,493 (53,920)	665,546 (53,920)	1,234,330 (100,000)

금융기관 기간(현금기준)	I. 예금은행				II. 한국산업은행				III. 수출입은행			
	(1) 경제금융 자금	(1) 금융자금 ① 경제금융 자금	② 체정 자금	③ 국민투 자자금	④ 외화대출	(2) 일반금융 (3) 대출금융	(3) 대출액	대출총액 (1+(2)+(3))	(1) 경제금융 자금	(1) 대출금융 (2)+(3)	(1) 대출액	대출총액 (1+(2)+(3))
1972 579,823 (37,632)	381,372 (24,765)	95,666 (6,212)	—	102,785 (6,673)	720,978 (46,819)	1,300,801 (84,471)	239,133 (15,525)	818,956 (53,181)	1,539,934 (100,000)	—	—	
1973 790,163 (38,846)	558,033 (27,434)	103,998 (5,113)	—	128,132 (6,299)	925,477 (45,418)	1,715,640 (84,344)	318,470 (15,655)	—	1,108,633 (54,502)	2,034,110 (100,000)	—	
1974 1,182,663 (38,798)	839,857 (27,552)	127,600 (4,186)	20,397 (0,669)	194,809 (6,391)	1,439,898 (47,237)	2,622,561 (86,035)	425,693 (13,965)	—	1,608,356 (52,763)	3,048,254 (100,000)	—	
1975 1,448,825 (37,869)	914,527 (23,904)	138,410 (3,618)	53,360 (1,395)	342,528 (8,953)	1,799,245 (47,028)	3,248,070 (84,897)	577,819 (15,103)	—	2,026,644 (52,972)	3,825,889 (100,000)	—	
1976 1,860,916 (38,681)	1,237,995 (25,733)	155,787 (3,238)	120,985 (2,515)	346,149 (7,195)	2,210,122 (45,940)	4,071,038 (84,621)	739,893 (15,379)	—	2,600,809 (54,060)	4,810,931 (100,000)	—	
1977 2,487,230 (39,201)	1,561,666 (24,612)	221,587 (3,492)	196,698 (3,100)	507,279 (7,995)	2,729,032 (43,012)	5,216,262 (82,213)	1,007,969 (15,885)	120,641 (1,901)	3,615,769 (56,988)	6,344,801 (100,000)	—	
1978 3,950,270 (42,618)	2,281,468 (21,490)	302,108 (3,243)	287,746 (3,089)	1,098,948 (11,796)	3,737,675 (40,121)	7,707,945 (82,739)	1,443,475 (15,495)	164,611 (1,762)	5,578,356 (59,879)	9,316,031 (100,000)	—	
1979 5,819,690 (44,537)	3,386,693 (25,923)	347,399 (2,659)	362,719 (2,776)	1,722,879 (13,188)	4,880,967 (37,361)	10,700,657 (81,908)	2,138,037 (16,366)	225,523 (1,726)	8,183,250 (62,639)	13,064,217 (100,000)	—	
1980 8,440,487 (45,829)	4,935,171 (26,795)	503,935 (2,736)	405,255 (2,200)	2,596,126 (14,096)	6,359,999 (34,533)	41,800,486 (80,362)	3,105,249 (13,861)	511,456 (2,777)	12,057,192 (65,467)	18,417,191 (100,000)	—	
1981 11,164,359 (46,461)	7,258,210 (30,205)	643,949 (2,680)	487,191 (2,027)	2,775,009 (11,548)	8,092,334 (33,677)	19,256,693 (80,137)	3,825,311 (15,919)	947,601 (3,943)	15,937,271 (66,323)	24,029,605 (100,000)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각 호)

한국은행, 내부자료

한국은행, 『한국의 통화금융통계 : 1960~73』
주 : 금융자금=환인어음+수출자원금융+기체공업육성자금+증정기분할상환+농업자금+수산자금+중소기업자금+수출산업설비자금+특별설비자금+증소기업자금+수산자금+차관자금+주택자금+기타
외화자금=농업자금+증소수입유산소+외화대출

의한 指示金融的 性格을 띠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② 政策金融의 財源別 類型

政策金融을 財源別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④ 韓國銀行再割支援 : 輸出支援金融, 에너지節約施設資金, 軍需產業支援金融.

④ 政府利益補填 : 中小企業特別資金, 輸出產業設備資金.

④ 協助融資 : 觀光振興資金, 產業合理化資金.

④ 財政 및 借款資金(特殊銀行專擔) : 產業銀行, 中小企業銀行, 住宅銀行, 農·水協, 輸出入銀行取扱金融.

④ 國民投資基金 : 國民投資基金貸出.

④ 韓國銀行保有外貨 : 外貨貸出, 內國輸入 유산스(usance)

④ 自體資金 : 一般中小企業資金, 需要者金融, 學資金, 夏季貯炭資金, 地方自治團體與信, 災害復舊支援資金 등 23個 資金.

③ 政策金融의 問題點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一般銀行은 企業性과 公共性의 적당한 調和를 이루면서 發展해야 하는데 政策金融은 그 定義上 一般銀行의 企業性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政策金融에 의한 貸出은 一般銀行의 意思와는相反되게 이루어질 可能성이 많을 것이다.

政策金融은 經濟開發計劃의 수행에 必要한 資金을 政策的으로 優先順位에 따라 配分한다는 의미에서 成長通貨의 供給을 增大시켜 준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貯蓄에 의해 동원되는 資金이 아니고 通貨增發에 의한 것일 때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켜 一般大衆의 貯蓄意欲이 저상되고 따라서 一般銀行의 金融仲介機能, 특히 受信機能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現象은 政策金融의 特性인 低利子率에 의해 더욱 深化된다. 왜냐하면 貸出利子率이 낮으면 預金利子率도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이것은 貯蓄意欲을 더욱 저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지만 資本主義經濟의 健全한 發展을 위해서 一般銀行은 이른바 第2次的 審查機能을 잘 수행해야 한다. 資本主義經濟는 企業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며 企業活動의 實現은 投資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어떤 企業이 投資를 計劃할 때, 그 企業의 投資의 收益性에 대한 審查는 1次的으로 企業自體가 行할 것이지만, 그 企業이 投資에 必要한 資金을 借入하고자 하면 一般銀行은 그 企業에 대한 融資에 앞서 그 事業의 收益性에 대한 第2次的의 審查를 行하게 된다. 一般銀行의 第2次的 審查機能은 不健全한 投資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한 資本主義經濟의 하나의 制度的 裝置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一般銀行이 이러한 第2次的 審查를 하지 않은 채 政府의 政策 또는 指示에 따라 融資를 행하게 되면 不健全한 投資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며 그 結果 資源의 浪費를 招來하게 된다. 따라서 資本主義經濟의 健全한 發展을 위해서는 一般銀行의 第2次的 審查機能이 확실히 保障되어야 하며 政策金融은 앞으로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

(4) 政策金融에 대한 對策

政策金融이 갖는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現在의 產業構造와 企業의 處地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政策金融을 一時에 完全히 없앨 수는 없으나 앞으로도 相當한 期間 存續될 것으로 展望된다. 다만 앞으로는 政策金融을 높 수 있는 대로 政府所有의 金融機關, 즉 特殊銀行에 移管하여 一般銀行은 이를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同時に 取扱金融機關의 自律性도 最大한 保障하여 第2次的 審查機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長期的인 經濟成長과 연관시켜 볼 때 그 名分이 뚜렷하지 못한 政策金融은 一般金融으로 흡수시키는 것과同時に 資金 어베일리빌리티와 金利面에서 二重으로 優待를 해주는 現 政策金融制度를 廢止하고 앞으로는 政策金融을 資金 어베일리빌리티 중심으로 運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非銀行金融制度의 改編

① 우리나라 非銀行金融制度의 現況과 改編方向

1970年代에 들어 발전하기 시작한 非銀行金融機關들은 銀行部門이 政府의 統制下에서 위축을 면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종류나 규모면에서 많은 成長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非銀行金融機關의 張창은 그 규모 및 運用方式 등에 있어서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銀行制度의 改編이 절실한 이 때 이와 호응하는 非銀行金融制度의 改編은 金融制度 全般의 效率을 相乘的으로 높여 궁극적으로 實物部門의 效率提高와 연결되는 方向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改編은 基本的으로 非銀行金融機關이 市場經濟의 原則下에서 순조로운 成長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基盤을 造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더하여 經濟內의 巨視經濟變數의 變化를 겨냥한 諸般 貨幣金融政策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非銀行金融機關도 政策效果의 對象에 포함할 수 있는 制度的 改編을 고려해 보는 것도 非銀行金融制度의 相對的 規模가 擴張되는 이 때 要緊한 것으로 보인다.

② 非銀行金融制度改編의 内容

上記의 改編方向에 입각한 制度改編은 다음의 内容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諸般 金融市場에서의 證券의 價格 및 利子率이 市場原理에 의해 決定될 수 있도록 誘導되어야 한다.

둘째, 金融機關들의 意思決定의 自律性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째, 各種 金融市場에 存在하는 進入의 障壁이 除去되어야 한다.

네째, 金融機關間의 重複業務分野가 合理的으로 調整되어야 한다.

다섯째, 非銀行金融制度 全般에 對한 信賴基盤을 다지기 위한 制度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貨幣金融政策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非銀行金融機關들을 政策의 對象으로 흡수할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차례로 詳論하면 다음과 같다.

② 金融市場의 自律化

우리 經濟가 指向하는 바가 究극적으로 市場經濟構造에 의한 경제진반의 效率極大화라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와 같은 金融市場에서의 價格機構의 歪曲은 그 폐해가 비단 金融部門뿐만 아니라 全經濟에 累積되어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財政證券을 비롯한 各種 證券의 價格은 물론 企業어음과 商業어음에 對한割引率도 政府의 決定에 크게 좌우되는 現象은 각 金融市場에 대한 誘因을 감소시키는 要因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企業의 投資意思決定에도 그릇된 信號를 보냄으로써 經濟 全體의 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沮害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沮害要因의 除去를 위해 각 金融證券의 價格 및 利子率의 決定過程은 簡潔적으로 自率化되어야 할 것이다.

③ 金融機關意思決定의 自律化

비록 非銀行金融機關에 대한 統制가 銀行에 대한 그것에 비하여 적었다고는 하나 사실상前述한 金融意思決定의 核이라 할 수 있는 證券價格 및 利子率決定上의 制約뿐만 아니라 金融機關의 正常的 業務領域의 諸分野에 不必要한 規制 및 指示가 橫行해 왔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非銀行金融機關에 對한 過度한 統制는 簡潔적으로 縮小되어야 한다. 이러한 統制의 緩化는 經濟性에 의해 金融機關의 意思가 決定되고 그 收益에 의해 그 公當性이 審判받는 진진한 金融風土造成의 前題가 될 것이다.

④ 進入障壁의 徹廢

現在의 非銀行金融制度內에 시도 部分的으로 過多競爭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되는 業種이 없지 않으나 全般的으로 우리나라의 非銀行金融制度內의 各業種을 보면 그 參與金融機關의 絶對的 數조차 미미한 實情이다.

이러한 현상이 新參企業의 進入을 가로막는 制度的 障碍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障碍는 점진적으로 除去되어야 한다.

물론 金融의 國際化를 내세운 金融機關의 大型化도 바람직하나 根本的으로 金融機關 内部의 革新(innovation)은 金融機關間의 競爭의 產物임을 염두에 둘 때 非銀行金融制度 内의 各業種에 있어서의 新參企業의 役割은 充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⑤ 重複業務의 調整

非銀行金融制度에 대한 政府의 育成過程에서 多樣한 業種의 金融機關의 業務領域에 對한合理的 分業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業種相互間의 機能上의 重複 및 그 可能性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短期金融機關과 綜合金融機關間의 業務重複으로 因한 過多競爭 및 그로 因한 경제전체의 非效率을 防止하기 위해 業種들 사이의 固有業務領域을 再調整할必要가 있다. 동시에 類似한 機能을 違行하는 業種의 金融機關들은 그 區別을 없앰으로써 對等한 위치에서 자유로이 競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過程이 市場機構에 의해 違行되는 것이 理想의겠으나 金融機關의 도태에 따른 社會的 費用을 고려할 때 業種間의 業務領域을合理的으로 設定하는 것은 감내할 만한 社會的 費用으로 多樣한 金融서비스를 追求하는 經濟社會의 理想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⑥ 信賴基盤의 造成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非銀行金融制度는 外形的으로 상당한 成長을 이룩하였으나 制度 자체의 基盤을 이루는 長期的 信賴度의 維持라는 面에서의 不安要因이 도사리고 있음을 看過할 수 없다.

우선 長短期 金融業이 多樣한 去來對象企業 및 個人에 대한 信用評定(credit rating)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이를 專擔할 客觀的 權威를 가지는 獨立된 信用評定機關의 設立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金融去來의 範圍와 量이 擴大됨에 따라 個個의 金融機關이 去來相對의 信用度를 정확히 測定한다는 것은 深히 어려울 뿐 아니라 가능하다고 해도 그 費用은 莫大할 것이다. 따라서 金融機關의 收益性의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金融制度 全般에서 去來費用의 節約을 通한 效率性을 높이고 金融制度의 '安定性'과 信賴度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信用評定機關의 設立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非銀行金融制度內의 一部業種에서 나타나는 過多競爭行爲나 談合 등의 競爭制限的 行爲는 規制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證券投資信託業界의 경우 會社가 一般投資者를 위해 證券投資를 代行하면서 一定率의 利益을 保障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慣行은 一般投資姿勢를 그릇되게 할 뿐 아니라 會社의 長期的 支拂能力을 損傷시키고 있다. 결국 이는 金融制度 全般에 對한 信賴度의 問題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非現實的 去來條件 등을 規制되어야 한다.

한편 保險業界에서의 保險料率의 設定 등에 있어서 談合 등이 介在되어 業種內의 競爭制限要素로서 作用하여 全業種에 對한 信賴度低下를 가져 오지 않도록 充分한 政策的 考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째, 專門金融人力의 養成을 위한 配慮가 있어야 한다.

金融制度의 效率性 및 安定性은 사실상 制度 자체의 合理性과 더불어 거기에 從事하는 金融人力의 質에 크게 依存하는 것이다. 日淺한 우리나라의 非銀行金融制度는 그 必要人力을 大部分 既存銀行機關들로부터 充員하였는데 그들의 우수한 銀行業務處理能力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專門化 및 大型化되어가는 非銀行金融機關을 管理할 能力を 期待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膨脹·發展하는 非銀行金融制度의 效率性과 信賴度를 높이기 위해 專門金融人力의 養成을 促進하는 政策의 眼目이 아쉽다.

④ 貨幣金融政策과 非銀行金融制度

非銀行金融制度가 金融部門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貨幣金融政策手段은 그 有效性이 低下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貨幣金融政策이 그 有效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非銀行金融制度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要求된다.

첫째, 貨幣市場의 幅과 機能이 擴大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現在 制度의으로 可能한 貨幣市場으로는 콜市場, 財政證券市場, 企業어음割引市場, 商業어음割引市場, 讓渡可能預金證書市場, 銀行引受어음市場, 또 條件附債券賣買市場 등이 있지만 그 全體의 市場의 規模나 多樣性의 面에서 開發初期段階에 있다. 특히 콜市場의 경우 非銀行金融機關의 參여를 어렵게 함으로써 非銀行金融制度의 發展을 沢害할 뿐 아니라 貨幣市場을 통한 貨幣金融政策의 有效性도 損傷시키는 面을 보이고 있다.

이의 是正을 위해 貨幣市場의 規模와 多樣性을 높이는 다른 措置들과 더불어 貨幣市場에

可能한 한 모든 金融機關이 參여할 수 있도록 그 制度나 運用方式이 고쳐져야 한다.

이에 덧붙여서 非銀行金融機關 특히 短期金融機關들의 支拂準備金을 現在와 같이 銀行機關에 預置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를 中央銀行에 預置하도록 하는 등의 措置를 강구하여 貨幣金融政策의 有效性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의 곳곳에서 強調한 바 있지만 이상과 같은 制度上의 改編은 그것이 예상하는 效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衝擊的으로 一時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 그럴 수 있다고 期待되어서도 안 된다. 무릇 拙速한 制度의 變革은 심한 副作用을 낳기 마련이지만 金融產業이란 결국 信用이라는 商品을 生產하는 것이 그 機能이며 信用은 本質的으로 經濟組織의 全構成員의 誠實性을 土壤으로 자라는 지극히 損傷되기 쉬운 性質의 것임을 생각할 때 金融制度改編에 있어서의 漸進性과 慎重을 喚起시키는 것은 단순한 蛇足 이상의 意味를 가지는 것이다.

골으로 이러한 金融改革은 우리 經濟가 市場經濟의 效率性을 最大로 示顯하며 순조롭게 成長해 나가기 위해 長期的인 必要條件의 하나로서 이해되고 接近되어야 하며 實物經濟部門의 一時的 政策目標達成의 隘路打開의 한 手段으로 이해되어서는 그 實效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趙淳, 『韓國經濟의 現實과 進路』, 比峰出版社, 1981.

趙淳 外 7人, 『一般銀行制度의 改編方向에 관한 研究』, 韓國銀行, 1981.

金秉柱外 11人, 『非通貨金融機關의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韓國銀行, 1981.

韓國銀行, 『韓國의 通貨金融統計』, 1974.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制度』, 1975.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政策』, 1977.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각호.

韓國銀行, 『週刊內外經濟』, 각호.

韓國銀行 企劃部, 『韓國銀行基本法令, 銀行法 및 改正推移』, 1979. 12.

韓國投資金融, 『經濟發展과 金融產業』, 1981.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 20年の 回顧와 反省』, 1982.

財務部 理財局, 『韓國의 金融政策』, 1979.

韓國產業政策研究所, 『韓國短期金融市場에 관한 調查報告書』, 1981.

Chung, Joseph Sanghoon, "The Economic System," *Studies on Korea: a Scholar's Guide*, Univ. of Hawaii, 1980.

Cole, David C. and Yung Chul Park, *Financial Development in Korea, 1945~78*, Working Paper 7904, KDI, 1979.

Schumpeter, Joseph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1934.

World Bank, *Korea: Financial Sector Report*, May 30, 1980.

<討論>

金秉柱教授*의 論評

제한된 紙面에 우리나라 金融產業 및 政策의 發展推移와 改革方向을 잘 整理한 글로서 처음 이 문제에 接근하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특히 改革과 관련하여 急進을 피하고 漸進의 姿勢를 強調한 發表者의 見解가 印象的이다.

몇 가지 문제를 指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는 政府 및 公共團體의 發行物을 읽을 때 行間을 읽으려고 努力하여야 하며 동시에 發表와 實行 간의 隔差를 探知하는 姿勢가 요청된다. 지난날의 金融政策을 서술하는 發表論文을 대하면서 「…하였다.」를 「…하였다고 한다.」로 바꾸어 읽는 나 자신을 發見하곤 하였다. 특히 直接規制와 間接規制가 交叉되었다는 대목에서, 政策當局이 어떤 規制方式을 내세웠건 항시 與信管理에 관한介入의 손길을 늦추지 않았던 지난날의 慣行(최근에는 다소 사정이 다름.)을 잊을 수 없다.

둘째로, 發表者가 改革 이후 一般銀行의 公共性을 이야기하면서 銀行들이 充分한 「成長通貨」를 供給할 것을 強調하였다. 「成長通貨」의 意味가 不分明하나 만일 그것이 「經濟成長을 원활하게 하는 通貨供給」을 뜻하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만일 言及하는 對象機關이 中央銀行이라면, 物價(通貨價值)의 安定, 完全履備, 國際收支 등 餘他의 政策目標를 且置하고 유독 經濟成長만을 強調하는 論據는 무엇인가? 만일 言及對象이 一般銀行이라면(이 경우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지난날 官治金融下에서 經濟成長의 加速化를 위하여 이른바 戰略部分에 대한 資金配給에서 派生된 金融產業의 犠牲을 앞으로도 持續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銀行機關들이 企業部門의 왕성한 資金需要와 政府의 貸出指導에도 불구하고 資金餘裕를 누리는 時期가 언제 한번인들 있었던가? 實際로는 銀行들은 慢性的으로 支準 포지션의 不足에서 벗어나지 못해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成長通貨」의 要請은 사실상 虛構가 아닐까?

세째로, 金利水準의 高低를 判斷하는 基準으로서 實物金利보다 名目金利를 따르는 發表者的 主張이 異色的이다. 討論者도 金融機關들이 인플레이션에서도 資產再評價가 충분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狀況에서 資產의 實質價值보다 資產의 名目價值에 더 關心을 가

* 西江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經驗資料를 만지면서 갖게 되었다. 그러나 發表者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충분한 檢證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討論者는 發表者的 漸進主義를 原則的으로 贊同하되, 다만 그 内容에 있어서는 보다 進步的인 見解를 갖고 싶다.

金有培教授*의 論評

(1) 金融과 實物經濟의 發展關係를 살펴보면 패트릭(Patrick)이 말하는 需要追從(demand-following)이나 供給先導(supply-leading)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即, 經濟發展의 初期에 있어서는 金融이 經濟發展을 先導하게 되나 어느 段階 以後부터는 금융의 발전이 實物經濟의 發展에 추종적인 경우가 大部分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70年代에 있어 金融產業의 非效率的 運營에도 불구하고 實物經濟의 成長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면 그 因果關係를 他國과 비교해서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 것인가? 또한 金融構造의 變化와 經濟成長의 關係, 即 經濟發展에 대한 金融의 역할을 強調할 때 制度金融 뿐만 아니라 私金融의 역할에 對한 評價가 있어야 한다. 만약 制度金融이 취약했다면 私金融이 어느 정도 이를 代役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2) <表 1>(p. 436)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金融이 量的으로는 實物部門에 못지 않은 成長을 해 왔다는 것을 說明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가 分明하지 않다. 單純한 통화량이나 國內信用의 增大 뿐만 아니라 金融機關의 金融資產規模變動이나 製造業 매출액에 對한 金融機關預金比率의 變動推移를 함께 고려함이 타당할 것이다.

(3) 一般銀行 自律化의 필요성을 強調할 때 銀行의 民營化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言及이 없는 것은 民營化 없이도 自律性은 充分히 發揮될 수 있다고 보는 見解인가? 例를 들어, 銀行經營內部의 人事權이 없이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自律的 經營이 가능하겠는가? 만약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등 일반은행의 민영화가 大企業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필자의 주장대로 정책금융이 지향되며 은행의 기업이윤이 보장될 때 과연 公共性 및 社會的 效率性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 이에 대한 對策은 어떻다고 생각되는지?

* 成均館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孫正植教授*의 論評

지난 20年間에 결친 우리나라 經濟의 展開過程과 金融發展에 대한 要約과 評價에 대하여는 同感한다.

本論文은 우리나라 金融產業의 進路를 設定해 주고 있는데, 金融產業의 全分野에 관한改善案이 아닌 改革案을 담고 있다. 金融產業에 관한 全般的인 改革案을 접하고 보니, 광범위한 改革案이 너무 쉬게 그리고 간단하게 제시되었거나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앞선다. 예를 들어 韓國銀行의 獨立性을 촉구하는 方案만 하더라도 獨立性이 必要한 理由를 네 가지 列舉하는 것으로 論理的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동안 獨立性을 제약했던 목적과 근거, 通貨政策의 結果에 대하여 누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가 등에 관한研究 없이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鄭教授의 改革案들은 앞으로 그 하나 하나에 대하여 보다 활발한 研究와 論議가 필요하다는 方向提示로 받아들이고 싶다.

1. 韓國銀行의 自律化

이제 具體的인 改革方案에 대한 本討論者의 見解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中央銀行의 改革方案을 제시하면서 「韓國銀行의 自律化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制度의 改善이라기 보다는 政府政策의 基本方向의 轉換」(p. 451)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그 근거로서 제시된 「왜냐하면 政府가 만약 經濟를 效率的으로 움직이고 싶은 의지만 굳게 갖고 있다면 韓國銀行의 自律性保障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주장은 동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中央銀行의 獨立性을 제한한 것은 經濟를 效率的으로 움직일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獨立性을 제한하여 資金의 조달과 운용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小見으로는 政府가 轉換해야 할 基本方向은 80年代 經濟를 運用하는 데 있어서 60年代 및 70年代와 같은 政府의 直接的 介入은 非效率的임을 인식하고 그 介入方法을 轉換할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經濟運用方法을 轉換할 의사가 없다면 金通運委의 機能再定立 또는 議長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별로 큰 意味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 경제운용을 民間主導方式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中央銀行의 獨立性 提高가 필요한데, 보다 중요한 것은 金通運委의 議長職은 누가 맡도록 하느냐 보다, 오히려 中

* 漢陽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央銀行 總裁의 任期保障制度의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행법으로는 金通運委 委員을 정부의 部處長官 및 역시 政府統制下에 있는 金融機關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委員構成에 있어서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民間主導經濟下에서는 정부추천 委員數를 줄이고 民間經濟 各部門에서 추천하는人事로 一部 代置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예를 들면 商工會議所, 全經聯, 勞總, 消費者聯盟 等 民間經濟機構의 추천人事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2. 一般銀行制度 改編

일반은행제도의 개편안에 대하여 論議하기 전에 밝히고 싶은 것은 經濟成長過程에서 金融機關의 役害에 대한 評價에서 (p. 436), 政府가 은행의 심사기능을 장악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난 후에, 은행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공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金融機關의 機能을 떠 맡은 정부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與否일 것이다. 심사기능을 빼앗긴 은행에게 심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대단히 억울한 이야기일 것이다.

鄭教授는 은행제도개편에 있어서 銀行의 주요기능으로 成長通貨의 供給을 力說하고 있는 테 (p. 451), 成長通貨의 供給은 通貨當局의 責任이고, 은행은 주어진 通貨量을 效率的으로 運用하는 方案을 모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은행의 公共性을 강조했는데, 은행 정도의 大企業은 製造企業이건 서비스企業이건 모두 公共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은행이 利潤을 추구하는 私企業임을 인정하면서 公共性을 강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며 不必要한 것 같다.

또한 鄭教授는 競爭原理를 도입하기 위하여 新參銀行의 設立許可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그것이 은행의 支拂能力과 公信力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p. 453).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預金銀行들이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은 그 數가 적어서가 아니라, 競爭의 요체인 價格 즉 金利가 정책적으로 규제되어 있어서 價格競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며, 價格競爭이 불가능할 때 생길 수 있는 品質競爭 즉 서비스競爭도 하지 않는 것은 은행의 國有化로 收益性提高動機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競爭原理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進入障壁을 낮추는 것보다 金利自律化, 銀行民營化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우리는 小型마을금고 不實로 인한 公信力 저하문제를 자주 보고 있다. 小型 은행수의 증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은행 전체의 公信力에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

鄭教授가 은행의 대형화로 인한 規模의 經濟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p. 453)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大型化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海外建設業體의 支給保證 要

求規模가 개별은행 資本金의 100%를 초과하고 있는 때에, 資本金의 50% 水準으로 제한하고 있는 支給保證限度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이 때에 限度를 引上하거나 例外規程을 만드는 것은 은행의 安全性을 크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한두 개 은행만이라도 大型화하는 것이 좋겠다.

3. 金利政策

鄭教授는 金利制度의 改善策으로 金通運委가 標準金利를 정하고, 個別銀行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金利를 彈力化하라는 주장인데(p. 447), 지금처럼 資金超過需要狀態下에서는 은행금리가 貸出需要與件이나 借入者의 與件에 따라 變動될 것 같지 않고 標準金利+ α 水準에서 固定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政策金融의 改編

鄭教授의 정책금융에 대한 對策에 동감하면서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책금융은 한번 실시하기 시작만 하면 滿了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政策金融의 實施에는 滿了期間을 設定하도록 하여, 滿了期間이 되어 政策當局이 延長措置를 취하지 않으면 自動 中斷되는 제도 즉 滿了條項(sunset clause)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